

「2024년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우리 지역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30.

경주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4년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1인 청년가구는 대상이 아님

다. 접수기간 : 2024. 9. 30.(월) ~ 10. 25.(금)

라. 모집물량 : 청년신혼부부 65호

- 지원금액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마.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월세 5만원 임대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

2) 지원기간 : 1년(임대인과 협약일로부터 1년)

바. 제출서류 안내 : 11종(4쪽 제출서류 안내 확인)

사.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ingu2770@korea.kr)

2

지원 임대주택

가. 위치 : 경주시 관내

※ 사업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기 임대차계약한 주택

나. 지원 물량 : 65호(신혼부부 65호)

3

자격요건

가.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4.10.1.~2005.9.30.)인 신혼부부 세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청년 1인 가구는 본 사업 대상이 아님.

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이면서,

3)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4) **임대보증금 5,000만원** 및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의 임대주택 계약자

- 단, 기존 거주자가 아닌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시작일이 11월 30일까지여야 신청 가능함.

나. 신청지원 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 경상북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4)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5) 직계존속 소유 주택 거주자(유상, 무상 포함)

다. 취소사유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주소 미 유지 포함)
- 3) 기타 임대차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선정 절차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ingu2770@korea.kr)

1) 신청제목(예시) : [임대주택] 홍길동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 '24. 9. 30.(월) ~ '24. 10. 25.(금)

3) 신청 유의사항

- ◆ 신청 마감일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기간내에 접수가 안될 경우 추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 심사 등의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다.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2024.9.30.) 이후 발행본 스캔(PDF파일)하여 제출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발급처
1. 사업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신청서 출력 후 서명 혹은 날인- 경주시청 → 고시·공고	경주시청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번호 전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등본이 분리된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3. 혼인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일(7년 이내)을 알 수 있도록 사업신청자 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
4. 가족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알 수 있도록 부부의 부, 모 기준 각각 제출(본인의 부 · 모, 배우자의 부 · 모. 총 4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이력 전체 필요• 신혼부부 각각 제출 <p>※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업 신청불가</p>	건강보험공단
6.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각각 제출. 주택 소유여부 확인용- 재산이 있는 경우(자동차 등)엔 과세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7. 전년도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각각 제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국세청

8.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계약 중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계약한 건 포함) (특약사항에 임대인 계좌번호 명시) 	본인 소유
9.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소유자 확인용(제출용 열람용 모두 가능) 	인터넷등기소
10. 임대인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선정시 경주시와 임대인간 협약을 체결하여 1년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지급하지 않음) 	경주시청
11. 입금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전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월세 중 1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혹은 입금 확인서 공고일 이후 임대차계약한 경우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이체내역 혹은 입금확인서 제출 	본인 소유

1) **서류 보완 기간 내 [2024.09.30.(월)~2024.11.01.(금)] 서류 미제출 시 틸락 처리 됩니다.**

- 서류 보완 기간 : 2024.09.30.(월) ~ 2024.11.01.(금)
- 보완 방법 : 미비 서류에 대한 요청 메일 보냄. 보완 기간 동안 이메일로 보완서류 첨부하여 회신

- 2) 마감이후 취소·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최종 선정 후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임대인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4)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일정은 시 내부 심사 과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유의 사항

지원 자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임대주택 지원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자체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검증 후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당첨자 중에서 자격요건 '나.신청지원제외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의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동의 및 협약 선정 후 1년을 지원하며(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지원이 아님), 지원기간동안 퇴거(주민등록 주소 미유지) 등이 확인이 되면 남은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합니다.
입주자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임대료 금액 중 월 5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시가 45만원 지원하고 입주자 5만원 부담 그 외 임대보증금, 관리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p>※ 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예외</p>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시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퇴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되면 이미 임대인에게 선납한 1년치 임대료 중 남은개월만큼의 임대료는 반환 조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산합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가 기 임대차계약한 주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주시가 주택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아님) 기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며, 청년 1인가구는 해당 이 없습니다.(청년 1인가구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한 시 특별지원’ 사업을 참고하세요.) 입주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지원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될 시 새로운 소유자는 본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계하여야 합니다.(기존 소유자는 이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승계함을 알려야 함.)
문의처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054-760-2777)

6

자주하시는 질문 및 답변(Q&A)

● 월에 5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 기존 임대차계약되어 있는 월 임대료 중 5만원은 임대인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 선납합니다. 그 외 보증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빙 하시면 되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취업준비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근로(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가 대상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19세 ~ 39세) 이어야 하며,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주소의 경우 공고일 후 경주시로 이전하고 신청한 경우도 포함)

●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 시에는 필수가 아닙니다.(단 부부 모두 경주시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선정이 되면 지원 전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기간동안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둘 중 한명이라도 퇴거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모집자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 공고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가 증빙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 주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사업 대상자(다듬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 ☞ 본 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사항의 내용 변경없이 월 임대료만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중 퇴거한다면 지원은 취소되고, 나머지 사항은 임대인과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원기간(1년)보다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가 먼저 도래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및 협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갱신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로 신청하면 접수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 전자메일의 수신확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담당자가 서류 접수 1~2일 경과 후 메일을 받았다는 답변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메일 수신여부 문의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합니다. 추첨 프로그램(유니피커)으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1번부터 65번까지가 당첨이며, 66번부터는 잔여예산이 있거나 당첨자 중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동의가 필수인가요?

- ☞ 네. 신혼부부에게 지급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에게 1년치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취소사유가 발생 시 지원금액 반환도 임대인이 해야하기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선정 후 경주시와 임대인은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임대인에게 충분히 하신 후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협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선정 취소됩니다.

● 임대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를 참고하기에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별도 계좌 혹은 임대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임대인(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발급번호	소 득 금 액 증 명 (년 귀속)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 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소득금액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단위 : 원)
구 분	소 득 발 생 처		지급 받은 총 액	소 득 금 액	총 결정세액	비 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용근로)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인)									

● 전세나 반전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100/월세 80, 보증금 1억/월세 10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인어른 명의의 원룸에 유상으로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 아니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명의로 된 주택에는 유상 및 무상 모두 신청 불가합니다.
-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하죠?
 - ☞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남은기간의 금액은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남은 지원기간동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계를 하지 못한다면 기존 임대인은 남은기간의 금액을 경주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협의하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 및 협약서를 임차인이 제출해도 되나요?
 - ☞ 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제출(스캔 후 전자메일 전송 포함)하시면 됩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이 발견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부부 인적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소득유무	전년도 소득의 합	
	본인				원	
	배우자					
신청인 직업사항	소득유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직장가입자 <input type="checkbox"/> 지역가입자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직장명 : (사업장명) · 주소 : · 연락처 :				
배우자 직업사항	소득유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직장명 : (사업장명) · 주소 : · 연락처 :				
	임대인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함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임대주택 사항	소재지		월 임대료	만원	보증금	만원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착오 기재로 인한 탈락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 마감 후 정정·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인은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해당 주택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중 퇴거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 지원금은 임대인이 반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에 정산합니다.
-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작성예시]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김길동	생년월일	1988. 6. 6.	성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경주시 양정로 260(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연락처	휴대폰	010-1111-1111	이메일	youth@gmail.com	
부부 인적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소득유무	전년도 소득의 합	
	본인	김길동	1988. 6. 6.	유	48,000,000원	
	배우자	이길동	1990. 5. 5.	무		
신청인 직업사항	소득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건강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장가입자 <input type="checkbox"/> 지역가입자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직장명 : (주)경주공장 · 주소 : 경주시 서면 내서로 111 · 연락처 : 054-751-1111				
배우자 직업사항	소득유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직장정보 (사업장정보)	· 직장명 : · 주소 : · 연락처 :				
	임대인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함	은행	농협	계좌번호	111-1111-1111-11	예금주
임대주택 사항	소재지	외동읍 산업로 1111, 101동 202호	월 임대료	50만원	보증금	2000만원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착오 기재로 인한 탈락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 마감 후 정정·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인은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해당 주택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중 퇴거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 지원금은 임대인이 반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에 정산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9. 30.

신청자 성명

김길동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대인 동의서

본인은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한 임차인 ○○○의 임대인으로서 모집공고문 및 임차인의 설명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임차인이 선정이 된다면,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월 임대료 중 일부(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는 경주시로부터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지원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하게 처분할 경우엔 새로운 소유자가 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동의서 및 협약서를 직접 제출(전자방법 포함)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대리로 제출하는 것을 위임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경주시와 임대인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약은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대한 사항 외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사항을 따릅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 경주시

2024년 월 일

임대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경주시장 귀하

[작성예시]

임대인 동의서

본인은 「경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한 임차인 김길동의 임대인으로서 모집공고문 및 임차인의 설명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임차인이 선정이 된다면,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월 임대료 중 일부(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는 경주시로부터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지원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하게 처분할 경우엔 새로운 소유자가 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동의서 및 협약서를 직접 제출(전자방법 포함)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대리로 제출하는 것을 위임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경주시와 임대인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약은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대한 사항 외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사항을 따릅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111, 101동 202호

2024년 9월 30일

임대인

성명 : 홍길동

(인)

생년월일 : 1964. 7. 17.

연락처 : 010-2222-2222
(휴대전화)

경주시장 귀하